#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46

발의연월일: 2024. 7. 3.

발 의 자:최수진·조정훈·박충권

이종배 · 김장겸 · 김민전

임이자 · 김예지 · 최형두

최보윤 • 구자근 • 박준태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의원이 구속된 기간에는 의정활동이 불가피함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을 제한 없이 수령하여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의원의 구속 기간에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여 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를 두고자 함(안 제16조 신설).

#### 법률 제 호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수당 등의 지급 금지 등) 국회의원이 구속된 기간 동안에는 제7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등의 지급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의원이 구속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6조(수당 등의 지급 금지 등)
	국회의원이 구속된 기간 동안
	에는 제7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
	활동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에는 소급하여 지급한다.